

교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2009. 06. 30. 최초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6. 01.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출장 : 대학의 업무수행, 학술연구, 학술교류, 국외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비파견 : 국비 및 이에 준하는 공적예산으로 연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학 : 전공분야의 학문연구를 위해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여행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여행자 선정기준) 국외여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 횟수
2. 교수업적 및 근무실적
3. 본 대학 재직기간

제4조(허가조건) ①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은 우리 대학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한 교원은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

②유학은 소속 학과별 교수의 휴직, 파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③기타여행은 학기 중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여행기간) ①출장 국외여행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통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의 명에 의한 공무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국비파견 여행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③유학은 2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방학기간중의 국외여행은 학기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연장의 제한) ①국비파견은 원칙적으로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유학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을 허가한다. 그러나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허가의 제한) ①유학은 1학과에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동일학과에서 동일한 시기에 다수 교원이 여행함으로써 학사업무 또는 직무수행에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은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절차) ①출장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출국예정일 15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01.01.>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출장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보직위임장(해당자)[별지 제4호 서식]

②기타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출국예정일 7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6.01.01.>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보직위임장(해당자)[별지 제4호 서식]

③국비파견 및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이외에도 관련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40일 전에 허가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6.01.01.>

제9조(연장허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01.01.>

제10조(여행 중의 신분) ①유학 및 수업기간 중 30일 이상을 결근하는 기타 여행은 허가와 동시에 휴직을 명한다.

②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휴직 처리한다.

제11조(여행 중의 보수) ①출장과 휴직을 명하지 않는 기타 여행기간 중에는 여행 전의 통상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국비파견기간 중에는 통상의 보수(학생지도비 제외)를 지급한다.

③유학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휴직을 명하는 기타 여행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12조(복무의무) ①6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한 교원은 여행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반하여 사직할 경우는 여행기간 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보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의무) 국외여행 교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 교원은 지정된 파견지와 연구 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 연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귀국하여 복교하여야 한다.
2. 국제학술대회발표, 공무수행 등으로 국외여행을 마친 교원은 귀국 후 1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1.01.>
3. 국외여행 파견교원은 6개월 이내에 여행목적 수행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학의 경우에는 학적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1.01.>
4. 여행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의담당 교원의 현저한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그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복귀 불응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는 일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01.0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학 과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여 행 내 용	구 분	연 구 () 학술발표 () 공무수행 () 유 학 () 과 견 () 방 문 () 관 광 () 기 타 ()			
	목 적				
	국 명		지 명		
	경 유 지 (국 명)		경 유 지 (지 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경비부담		가족동반 여 부		
<p>첨 부 : 1. 관련서류(초청장, 일정표 등) 1부 2. 후보강신청서(수업이 있는 경우) 1 부</p>					
<p>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인)</p>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01.01.>

국외출장계획서

1. 국외출장개요

출장자	학 과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국가		지명	
	방문기관			
출장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출장 내용 요약				

2. 국외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 동기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01.01.>

국외출장 서약서

본인은 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여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여행) 귀국 후,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여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5. 본인은 ‘공무 국외여행 보안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보안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학 과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6.01.01.>

국외출장보고서

출 장 인	학 과		성 명	
	직 명		생년월일	
출장구분	연 구 () 학술발표 () 공무수행 () 유 학 () 과 건 () 방 문 () 관 광 () 기 타 ()			
출장목적				
출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출 장 지				
출 장 결 과 내 용 (구체적으로)	(※교육출장의 경우 교육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효과 등을 별지에 작성)			
동 행 자	학 과	직 급	성 명	비 고
첨 부 : 출장 관련자료(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사본 등) 1부				
위와 같이 출장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 장 인 : (서명/인)				